⑪ 공유수면의 매립
⑫ 초지조성 및 전용
⑬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무선설비기기의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 등록
⑭ 화약류 사용
⑮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형식승인
⑯ 유물복제
⑰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및 검정
⑱ 보전임지전용 및 산림형질변경
⑲ 임산물의 굴취·채취
⑳ 공장설립
㉑ 사행기구의 제작 또는 수입품목별 검사
㉒ 유료도로의 신설 및 개축
㉓ 지하수의 개발·이용
㉔ 골재채취
㉕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㉖ 건축·대수선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변경허가를 포함하되, 그 증가된 분에 한함)
㉗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

○ 품목별 면허 : 제조 또는 가공업의 면허로서 품목별로 면허를 하는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별개의 면허로 보아 종별 구분에 불구하고 품목마다 제5종에 해당하는 면허세를 부과 (영 제124조)

<사 례>

① 의료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에 대하여는 변경허가신청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초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고 법인 대표자의 단순한 명의변경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이 되는 경우라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26조의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가 비과세됨(세정13407-10, 2000. 1. 4)
②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당구장업 변경신고는 면허세 과세대상임 (세정13407-593, '96. 6. 4)